

---

---

# 고려 전기 ‘迎契丹使臣儀’의 내용과 의미

---

---

한 정 수

(건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머리말

I. 거란사신 맞이하기와 客館

II. 詔書 받기와 私禮

III. 燕禮와 辭儀, 그리고 餞送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9776).

● 투고일: 2015. 5. 6.    ● 심사일: 2015. 5. 27.    ● 게재확정일: 2015. 6. 8.

www.kci.go.kr

## 요약

이 글은 고려가 거란사신을 어떻게 맞이하였는가와 관련한 賓禮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거란에서 고려로 파견되는 여러 유형의 사신단을 契丹詔使로 묶어 고려가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의례를 갖추었을까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I 장에서는 거란사신의 입경부터 객관에 머물렀다가 조서를 받는 의례가 있는 당일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II 장에서는 고려 국왕의 조서받기와 私禮의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가와 국왕 面位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III 장에서는 고려 국왕이 사신에게 베푸는 연례와 사신단의 辭儀, 그리고 고려측의 餞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복원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고려사』 예지 빈례 조에는 거란사신을 맞는 의례가 대폭 축소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고려에서는 중국 고대 『儀禮』 覲禮에서 기원하는 예 등을 참작하면서 빈례를 갖추었고, 이를 토대로 거란사신을 맞는 예를 운용하였다. 그것은 사신을 맞이하고[迎勞] 조서를 받는 의례[受詔], 국왕과 사신 간 이루어지는 잔치[宴儀], 귀국하는 사신을 위한 잔치[辭儀 및 餞] 등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불진연이나 受詔의 擇日, 面位 등에 있어서는 고려의 입장이 반영되었는데 동시에 이는 거란사신단과의 說儀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빈례에는 고려왕실이 마련한 禮制를 중심축으로 사대관계를 반영한 受詔나 拜表 등이 수행된 것이었다. 그 결과 고려의 ‘영거란사신’은 양국관계의 우호와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리라 본다.

주제어 : 儀禮, 賓禮, 契丹, 北宋, 事大關係, 國信使, 契丹使臣, 宴饗, 迎接, 餞宴

## 머리말

거란의 성장과 그 영향력 확대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흔들었다. 이는 기존 당 중심 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동아시아 세계의 재편을 의미했으며, 동시에 10세기 초 성립한 고려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고려는 거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주적 위상과 국가운영, 송과의 관계 유지 등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이 같은 면은 일차적으로 거란과의 충돌로 이어졌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충돌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거란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양국은 새로운 관계 설정과 정립의 과정을 밟았다.<sup>1)</sup>

그것은 사신을 맞는 고려측 의례 즉 賓禮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왕조사회에서의 빈례의 체계화는 중국 周代 천자-제후 간 알현이라는 의식이 정비된 『儀禮』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覲禮가 이에 해당하며, 구성은 크게 勞禮-賜館禮-戒覲期禮-覲禮-三享禮-請罪禮-賜車服禮-饗宴禮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를 원형으로 하면서 『開元禮』에서는 蕃主來朝遣使迎勞-皇帝遣使戒蕃主見日-蕃主奉見-皇帝受蕃使表及幣-皇帝宴蕃國主-皇帝宴蕃國使로 바뀌었다. 또한 송대 『政和五禮新儀』에서는 蕃國主와 大遼 使臣, 蕃使를 맞이하는 빈례를 체계화 하였는데 크게 본다면 迎勞-見儀-賜宴儀-辭儀(送儀)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빈례는 『의례』 근례가 원형이 되면서 각 왕조의 빈례로 예제화되었다 하겠다.<sup>2)</sup>

1)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재만, 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국학자료원; 이미지, 2012,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을 참조. 김성규, 2013, 「中國王朝에서 賓禮의 沿革」 『中國史研究』 23, 중국사학회. 한편 빈례를 포함한 五禮의 수용에 대해서는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참조.

『禮記』 곡례 편에는 빈례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이 있다. ‘禮는 마땅함을 따르고 使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른다.’라는 것이다.<sup>3)</sup> 이에 따라 서국은 『고려도경』을 통해 고려가 朝聘을 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군신상하가 禮文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고,<sup>4)</sup> 실제로도 서국은 고려의 빈례 운영을 주목하고 그에 따라 예를 행하면서 이를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 즉, 고려는 빈례를 갖추에 중국 제 왕조의 예제를 참조하고 국제질서를 감안하면서 고려 특유의 빈례를 마련하였을 것임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고려-거란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고려는 거란사신을 맞는 빈례를 갖추었다. 고려의 대거란 관련 빈례에 대한 연구는 빈례를 개관하거나 使節迎接禮를 통해 고려의 외교 자세를 논하는 글에서부터<sup>5)</sup> 최근에 이르러는 고려 외교에서 儀禮와 국왕의 자세를 살피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를 주도한 김성규는 10~12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해 빈례를 토대로 많은 연구를 제시하여 이 시기 동아시아질서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sup>6)</sup>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 『고려사』 빈례에 있는 迎北朝詔使儀와 迎

3) 『禮記』 曲禮 上, “禮從宜 使從俗”

4) 『高麗圖經』 권9, 儀物1, “唯高麗素通朝聘 久被漸摩 故其君臣上下 動有禮文”

5) 『고려사』 빈례 중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이범직, 1983, 「高麗使 禮志「軍禮 賓禮」의 검토」, 『明知史論』 창간호, 명지사학회(『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1 소수); 奥村周司, 1984,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十一,二世紀における對中關係の一面」, 『史觀』 110, 早稻田大學史學會; 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6) 김성규, 2000, 「高麗前期의 麗宋關係 - 宋朝 賓禮를 중심으로 본 고려의 國際地位試論」,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김성규, 2000, 「宋代 東아시아에서 賓禮의 成立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72, 東洋史學會; 김성규, 2001, 「入宋高麗國使의 朝貢 儀禮와 그 주변」, 『전북사학』 24, 전북사학회; 김성규, 2004, 「契丹國使宋皇帝謁見儀式의 主要 特徵과 그 意義」, 『歷史文化研究』 21,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歷史學報』 214; 김성규, 2012, 「『大唐開元禮』 所載 外國使 관련 諸儀禮의 재검토」, 『중국고중세사연구』 27, 중국고중세사학회

北朝起復告勅使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조는 거란과 금임을 확인하면서 자세한 의례전개과정 내용과 함께 국왕의 面位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sup>7)</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예지 빈례 조에 기록된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계로 의례의 전후에 대해서는 정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에 대해 짧은 사실 관계만 기록하고 있고 의례 내용 거의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이다. 戰火로 인한 소실 탓이거나 혹은 고려왕조에서 실록편찬 시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혹은 조선 초 고려 역사에 대한 정리 중 친명사대노선의 또 다른 반향 탓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고려에서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의례가 실제 어떠했는가에 대한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크게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고려 측의 준비와 입경, 객관, 의례 당일의 사절단의 출발 단계, 궁궐에서의 수조와 사절단이 행하는 私禮 단계, 마지막으로 宴禮와 辭儀 그리고 餞送 단계로 나누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

7)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교 의례 시 국왕의 西面에 대해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과 자주성의 발현이라 보았는데, 김성규는 이에 대해 거란 내부의 조화에서 ‘군주 동면’이 일상적이었으므로 피책봉국이자 하국인 고려의 국왕은 西面을 하게 되었다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김성규, 2014, 앞의 논문, 385~390쪽) 이와 함께 고려-거란 간 국제관계와 빈례에 대한 공동 연구발표가 최근에 이루어진 바 있다. 이바른은 『요사』 빈례조를 중심으로 거란의 고려사신에 대한 의례를 다루었고(이바른, 2015, 「契丹의 ‘高麗使’ 관련 의례 성립과 양국 외교관계의 의미-『遼史』賓禮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제137회 공동연구발표회 자료집』, 한국역사연구회) 박윤미는 이와 반대로 『고려사』 빈례조의 영북조조사를 분석하여 외교의례에서 중요시된 ‘面位’문제를 검토하였다.(박윤미, 2015, 「고려 전기 외교의례에서 ‘面位’ 문제와 그 의미」, 같은 책) 정동훈은 고려시대 빈례 전체를 검토하면서 중국 여러 왕조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 변화와 의미를 검토하였다.(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같은 책)

로 『고려사』 등에 산재하는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기록과 함께 『고려도경』에 정리된 受詔·燕禮·館舍 등을 참조로 복원을 시도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 고려가 거란사신을 맞이함에 있어 ‘迎勞-見儀-賜宴儀-辭儀-送儀’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I. 거란사신 맞이하기와 客館

고려는 거란에 대해 上國 지칭과 함께 조빙을 행함으로써 사대를 취하는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 15년(996) 3월 거란에서는 한림학사 張幹과 忠正軍節度使 蕭熬葛을 보내 왕을 開府儀同三司 尙書令 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다. 장간 등은 개경 서교에 도착하자 단을 쌓고 책명을 전하는 의식을 행하였다.<sup>9)</sup> 이때 책봉의 특징은 그동안 고려국왕에 대한 송의 책봉 지위가 군사적 면을 띤 데 반해 문관 실무책임자였다는 점과 서교에서 의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sup>10)</sup>

거란에 의한 첫 번째 책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압적 면이 책봉의에 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한 면에서 서교에서의 築壇과 傳冊은 거란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교가 갖는 장소의 성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다만 성종

---

8) 김성규는 최근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파견계기와 규모, 일정 등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어 본고의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김성규, 2014,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일정과 활동에 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40, 한국중세사학회)

9) 『고려사』 권3, 성종 15년 3월

10) 이에 대해서는 沈載錫에 의해 지적되었으나 문관 계통 관직 책봉이 이루어진 것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왜 서교에서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었다.(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105쪽)

15년 3월 이루어진 서교에서의 축단과 책봉이 이루어진 이래 기록 상 문종 3년(1049) 이후부터 고려국왕 책봉은 남교에서 행해졌다.<sup>11)</sup>

고려와 거란의 실질적인 관계는 현종 12년(1021)부터 본격화되었다. 고려가 거란에 보낸 사행 명목을 보면, 朝貢·賀正·賀天興節을 비롯한 賀節日·謝賀生辰 등외에도 告封太子·賀太后生辰·賀冊封·賀收復東京·賀改國號·賀即位·謝恩·謝封冊·謝賜誥命·謝冊太子·謝橫宣·乞冊·問候·弔慰·會葬·進奉 등이 확인된다. 반대로 거란이 고려에 보낸 사행 명목은 賀生辰·橫宣·冊王·回禮와 함께 下詔·冊太子·祭奠·告哀·請兵·督興師 등이 있었다.<sup>12)</sup>

- 
- 11) 정종 9년(1043) 11월 丁亥의 기록을 보면 정종이 거란으로부터 책명을 받을 때 축단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축단 장소가 서교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고려사』 권6, 정종 9년 11월 丁亥) 그런데 문종 3년 정월 丙午의 受冊은 남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이래 남교 책봉은 관행이 되었다. 예컨대 문종 9년 5월 辛酉, 문종 11년 3월 乙酉, 문종 19년 4월 庚子 및 癸卯, 선종 2년 11월 己未, 숙종 2년 12월 癸巳, 숙종 5년 10월 乙卯, 숙종 9년 4월 庚午, 예종 3년 2월 丙午 등의 사례가 있다. 금의 경우 책명을 인종 20년(1142) 5월부터는 왕궁에서 반포토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시 이 일에 대하여 “고사에 책명은 반드시 남교에서 받았으나 이제 완안종래 등이 조정의 지휘를 받아 비로소 왕궁에서 반포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 권 17, 인종 20년 5월 丙戌) 이렇게 본다면 고사에 책명은 반드시 남교에서 받았다는 함은 문종 3년 정월 이래의 책봉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종 15년 3월 서교에서의 축단과 수책 이래 문종 3년 정월 남교로 바뀌기 전까지는 성종 15년의 사례에 따라 서교에서 수책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란은 서쪽을 중시하는 관행이 있었고, 상국의 위치에 있던 거란은 이를 고려에 강제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란이 의례에서 서쪽을 중시한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385~390쪽.
- 12) 金渭顯,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152~153쪽 참조. 楊渭生의 글에서는 고려가 거란에 보낸 사행 회수는 220회, 거란의 고려 사행 회수는 대략 160회(994~1123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차이가 보인다. (楊渭生, 1997, 『宋麗關係使研究』, 杭州大學出版社, 170~171쪽) 한편 거란이 고려에 보낸 하생신사의 경우 이승민이 정리한 견하생신사를 보면 목종 즉위년(997)부터 예종 11년(1116)까지 79회로 집계되고 있다. (이승민, 2013, 「10~12세기 하생신사(賀生辰使) 파견과 고려-거란 관계」, 『역사와 현실』 89, 한국역사연구회)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고려가 거란에서 오는 다양한 목적의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목되는 점은 『고려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賓禮로 정리하면서 다섯 가지의 의례만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

이 중 아래 세 가지 의례의 경우 大明의 표현으로 본다면 명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으나 북조의 경우는 다소 난점이 있다. 기존에는 북조에 대해 송·요·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으나<sup>13)</sup> 이후 북조를 요와 금, 원이라 보기도 하였다.<sup>14)</sup> 최근 북조는 요와 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영북조조사의와 영북조기복고칙사의를 중심으로 고려 외교에서 의례와 국왕의 자세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15)</sup>

13) 李範稷, 1983, 앞의 논문

14) 金禹彤, 2010, 「高麗禮制研究」 『東岳論叢』 31-8

15) 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남조와 북조에 대한 인식은 김성규가 소개하고 있듯이 박인량 열전에 그는 文詞가 정아하고 아름다워 남북조의 告奏 表狀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한 데에서 남북조 인식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각기 송과 거란을 칭하는 것이었다. 특히 李美智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에서의 남북조 인식은 문종 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듯하다. 박인량의 경우도 문종 대 등과한 인물이지만 문종 12년(1058) 8월의 기록을 보면 ‘國家結好北朝 邊無警急’이라 하였고, 『고려사』 권8, 문종 12년 8월) 문종 30년(1076) 8월 경술의 기록에 북조가 정용진 관외에 암자를 설치하였다 하였다.(『고려사』 권9, 문종 30년 8월 庚戌) 이어 숙종 6년 8월 을사

본고에서도 북조는 남조에 대한 상대성을 담고 있는데다가 문종 대 이후 기록에서 거란에 대해 북조라 하고 있는 만큼 북조를 거란과 금으로 제한하는 의견을 수용하여 다루고자 한다.<sup>16)</sup>

거란 측 사신 맞기와 受詔, 전송 등은 공식적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마련된 빈례가 위에 말한 ‘영북조조사’와 ‘영북조기북고척사의’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유형의 거란사신단을 맞는 의례가 이 두 가지로 수렴될 수는 없다. 말하자면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사행의 목적에 따라 의례를 약간씩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례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가장 외교의례를 잘 갖추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詔使를 중심으로 이해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빈례를 다루기에 앞서 이를 담당한 기관은 어디였는가를 보자. 고려에서는 일찍부터 賓客을 맞아 이들과 관련한 燕享을 베푸는 일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한 관부를 정하였다. 태조 4년 禮賓省을 설치하였다는 대목이 이를 말해준다.<sup>17)</sup> 관원으로는 문종 대 이전의 경우 禮賓卿과 禮賓少卿, 禮賓省注簿 등이 확인되며, 문종 대 관제 개혁 때 정3품의 判事,

의 기록에서는 ‘北交大遼 南事大宋’이라 하여 북조가 대요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고려사』 권11, 숙종 6년 8월 乙巳) 다만 이 같은 용례에서 주목할 점은 북조라는 지칭이 대체로 송나라와 건주어 말할 때 쓰고 있다는 점이다.(李美智, 2012, 앞의 논문)

- 16) 다만 본 연구에서 북조의 대상을 거란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인종 4년(1126) 9월 금과의 청신사대가 본격화될 때 금에서 “고려는 무릇 사신을 보내어 왕래하는데 있어 요나라 때 옛 제도를 모두 따라서 하라.”(『고려사』 권15, 인종 4년 9월 辛未)고 권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북조조사이나 영북조기북고척사의는 기본적으로 거란사신에 대한 의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7) 『고려사』 권76, 지30 백관 예빈시. 예빈성은 성종 14년(995)에 客省으로 고쳐진 바 있으나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미 광종 대에 중국어를 잘한 張延祐는 객성에 제수되고 있다.(『고려사』 권94, 열전7 제신 皇甫俞義 附 張延祐) 이를 보면 명칭 변경이 태조 4년(921)에서 성종 14년에 한 차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예빈성의 이칭으로 이미 객성이 쓰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중3품의 卿 1인, 중4품의 少卿 1인, 중6품의 丞 2인, 중7품의 注簿 2인으로 바뀌었다. 이속으로는 書史 8인, 令史 8인, 記官 4인, 算士 1인, 承旨 4인, 孔目 15인, 都衙 15인이 두어졌다.<sup>18)</sup>

예빈성과 함께 주목되는 관서가 閣門이다. 백관지 通禮門 조를 보면, 통례문은 조회와 의례를 관장하였다. 통례문의 전신은 이어지는 설명을 볼 때 합문임이 분명하다. 합문의 설치는 목종 혹은 그 이전에 두어졌다. 먼저 통례문조에 합문과 관련해 목종 때 閣門使·副使·祗候가 있었다라 하였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런데 목종 즉위년(997) 11월 합문사 王同穎을 거란에 보내 왕위계승을 알렸다 한 점<sup>20)</sup>을 보면 목종 즉위년 혹은 그 이전에도 합문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신단을 맞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였다. 양국의 사정과 문화를 잘 아는 여진인이 있었을 것이나 고려에서 그들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새로운 역관 자원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에서 양국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미 성종 14년 동자 10명을 거란에 보내 거란어를 익히게 하였음이 확인된다.<sup>21)</sup> 이들 역관은 원접관과 함께 사신단의 입경에서부터 활약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빈객과 연향, 의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이처럼 예빈성과 합문으로 정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서 실제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과정에 대해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18) 『고려사』 권76, 지30 백관 예빈시

19) 이상 통례문 및 합문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권76, 지30 백관 통례문 참조.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합문은 문종 대에 이르러 대폭적인 관제 정비의 과정이 있었던 듯하다. 문종 대에 정 3품의 判事, 兼官하는 知事, 정5품의 使, 정5품의 引進使 2인, 중5품의 引進副使, 정6품의 閣門副使, 정7품의 通事舍人 4인과 祗候 4인, 그리고 權知祗候 6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 『고려사』 권3, 목종 즉위년 11월

21) 『고려사』 권3, 성종 14년

거란-고려의 사신 왕래 노정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기간 역시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인데, 고려에서는 이러한 사신의 여정을 고려하여 이들을 맞이하는 의례를 조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여정과 관련해 다음 기록들을 보자.

거란 성종 개태 2년(1013) 6월 신유 삭에 거란에서는 중승 耶律資忠을 고려에 보내 6주의 옛 땅을 취하겠다고 통보하고자 한 바 있었다.<sup>22)</sup> 그가 고려에 도착한 것은 현종 4년(1013) 7월 무신(18)으로 기록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다시 거란에 도착한 것은 『요사』에 같은 해 8월 기축일(30)로 나온다.<sup>24)</sup> 당시의 일은 국경문제를 두고 왕래한 것이기에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등은 간소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쨌든 이를 보면 거란에서 고려까지의 왕복은 대략 3개월이 넘는 여정이었던 듯하다.

다음으로 사신의 입국단계를 보자. 영복조조사이나 영복조기복고척사의 경우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은 왕이 乾德殿에 나와 앉고 여러 신료들이 肅拜敍位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반면 명나라 사신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경에 들어오면 먼저 關人을 보내 왕에게 馳報하고 곧바로 관원을 보내 조서를 원점토록 하고 있다.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그렇다면 북조사신의 경우에는 아무런 예비조치없이 사신단이 도착하자마자 건덕전에서 의례를 시작하였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대관계를 맺은 고려의 입장에서 거란사신은 그렇게 대우하기 어려웠다. 북조사신을 맞이할 때도 대명사신을 맞이할 때와 같았을 것이라 여겨지며 다만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 봐야 한다.

문종 9년 9월의 기록은 이 같은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거란 흥종이 흥서하자 도종이 즉위한 뒤 중희 24년(1055) 8월 계사에 송과 서하, 고려

22) 『요사』 권15, 본기15 성종 개태 2년 6월 辛酉朔

23) 『고려사』 권4, 현종 4년 7월 戊申

24) 『요사』 권15, 본기15 성종 개태 2년 8월 己丑

에 사신을 보내 부고하였다.<sup>25)</sup> 이때 고려에는 鴻臚少卿 張嗣復이 告哀使로 오게 되었는데 그의 입경부터의 과정이 주목된다. 즉, 장사복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보고를 받자 왕은 減常膳·輟音樂·禁屠宰·斷弋獵을 행하였다 한다.<sup>26)</sup> 그가 개경에 들어온 것은 을축일이었다.<sup>27)</sup> 거란사신의 입경과 동시에 국왕에게 보고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보면, 영대 명조사에게 보이는 ‘사신이 입경하면 관인을 보내 왕에게 치보하고 왕은 관원을 보내 조서를 원접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경하는 순간부터 고려에서는 遠接官과 역관을 보내 사신을 맞이하고 사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볼 수 있다.

사신단 구성은 대체로 정사와 부사, 三節 혹은 上·中·下使로 이루어졌던 듯하다. 삼절과 관련하여 선종 7년(1090) 9월에 좌우 유사가 사신 삼절을 모두 殿內에 앉도록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간언한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격에 해당하는 기록이 명종 8년(1178) 정월에 있었던 일이다. 즉, 中·下節人은 궁전 문 밖에서

25) 『요사』 권21, 본기21 도종 중희 24년 8월 癸巳

26) 『고려사』 권7, 문종 9년 9월 癸亥

27) 위와 같은 책, 문종 9년 9월 乙丑.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 되는데, 고에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입경 후 개경 도착이 이 정도였다는 점은 의문이 있다. 한편, 조선 초 명 사신이 오는 경우 원접사나 선위사를 보내 이들을 맞이하게 하였는데, 이들이 파견된 지역은 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義州·安州·平壤·黃州·開城·碧蹄 등이었다 한다.(金松姬, 1998, 「조선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一 研究」 『史學研究』 55·56합집, 한국사학회, 217쪽) 조선 전기 명으로의 육로사행 여정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데 한양을 출발하여 파주-개성-금교역-금암역·평산-용천-봉산-황주-평양-안정관-통령원·숙령관-안주-경주-운흥-양책-의주성으로 이어지고 있다.(具都暎, 2013, 「조선 전기 對明 陸路使行的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117, 진단학회, 76~77쪽) 압록강을 건너오는 경로가 거의 같았을 것임을 생각하면 고려의 경우에도 의주-안주-평양을 거쳐 개성부 속현인 강음현에 있는 金郊驛으로 들어왔으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8) 『고려사』 권10, 선종 7년 9월 庚辰

술을 내려줄 따름이며 왕을 직접 알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예전부터의 관례였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실제 『고려사』에서 사신단의 규모를 보면, 정종 9년 11월 거란에서는 冊封使 蕭愼微, 副使 韓紹文 등 130인을 보내왔다 하였다. 책봉사신단이 고려와 거란 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이 규모는 최대치에 해당할 것이다.<sup>30)</sup>

더불어 사신단이 개경에 머무르며 사신업무를 다하고 부수적으로 고려의 대소신료와 문장과 친교를 나눌 공간도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공간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성종 2년(983) 10월의 기록은 참조할 면이 있다. 즉, 개경에 주점 6개소를 열었는데, 成禮·樂賓·延齡·靈液·玉漿·喜賓이라 한 것이다.<sup>31)</sup> 주점이라고는 하였지만 악빈이나 희빈, 성례 등의 명칭을 본다면 객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종 9년 6월의 기록을 보면 송 책봉사신인 光祿卿 柴成務 등이 고려 조정의 陰陽拘忌論에 따른 擇月日로 館에서 달을 넘기게 되었다 하고 있다.<sup>32)</sup> 이를 보면 송이나 거란 등에서 오는 사신이 머무는 객관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종 2년(1011) 4월의 기록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즉, 당시에 迎賓·會仙 두 객관을 설치하여 여러 나라 사신을 대접토록 하였다는 것이다.<sup>33)</sup>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로 볼 때 주요 사신은 거란국 사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빈관과 회선관의 두 객관은 후일 변천이 있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거란-송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송의 사신은 영빈관,

29) 『고려사』 권65, 지19 에 빈례 명종 8년 정월 己酉

30) 『고려사』 권6, 정종 9년 11월 辛巳. 참고로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규모는 水夫를 제외할 경우 사·부(2인), 상절(25), 중절(23), 충대하절(58), 선무하절(50)로 158명이 된다. 사절단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김성규, 2014,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일정과 활동에 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40, 219~220쪽)

31) 『고려사』 권3, 성종 2년 10월 己亥

32) 『고려사』 권65, 지19 에 빈례 성종 9년 6월

33) 『고려사』 권4, 현종 2년 4월 丁卯

거란사신은 회선관에 머무르도록 하였던 듯하다. 『고려도경』에서 송의 선화봉사 등이 순천관에 머물렀다 하였는데, 순천관은 영빈관의 다른 이름이었다.<sup>34)</sup>

문종 9년(1055) 2월의 기록을 보면 출신 지역에 따라 객관을 달리한 사례가 확인된다. 寒食 때 송의 상인들은 娛賓館·迎賓館·清河館에서 탐라국 수령 등은 朝宗館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5)</sup> 출신 지역별로 분류하여 머물게 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신에 대해서도 송이나 거란 등을 구분하여 머물게 하는 館舍 운영이 있었다 하겠다.

徐兢은 객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거란의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迎恩館과 仁恩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南大街의 興國寺 남쪽에 있으며, 예전의 이름은 ‘仙賓’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예전 이름을 선빈이라 하였다는 점으로 본다면 그 명칭은 때에 따라 바꾸기는 하였더라도 현종 2년 설치된 회선관이 그 원류였다 여겨진다.<sup>36)</sup>

원점관과 함께 개경에 오게 된 거란사신단은 金郊驛을 경유, 西郊亭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명종 14년(1184) 5월 인예태후의 국상 때 고려에 온 金の 祭奠使 太府監 完顏暉가 비로소 서교정에 이르렀던 대목이 보이기 때문이다.<sup>37)</sup> 『고려도경』에 따르면 서교정은 宣義門 밖 5리 가량에 있다 하였다.<sup>38)</sup>

---

34) 『동국여지승람』에서 영빈관에 대한 설명 중 예전에는 迎恩館·順天館이 있었는데 아마 이 관을 때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 듯하다는 설명으로 보건대(『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궁실) 선화봉사가 묵었던 순천관은 영빈관으로 볼 수 있을 듯하며, 이후 원의 사신 및 명의 사신은 주로 영빈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35) 『고려사』 권7, 문종 9년 2월 戊申

36) 『고려도경』 권27, 館舍 客館

37) 『고려사』 권64, 지18 예 흥례 국홀 명종 14년 5월

거란사신단이 가지고 온 조서는 관사에서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고려도경』과 영대명조사의에 언급되고 있다. 『고려도경』에서는 조여 혹은 채여에 실어 온 조서를 봉안하는 곳이 順天館 詔書殿 詔位라 하였고,<sup>39)</sup> 영대명조사의에서는 조여를 龍亭이라 하여 공관 즉 관사 가운데 둔다 하였다.<sup>40)</sup> 이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거란에서 보내온 조서 역시 회선관 혹은 영은·인은관 등 거란사신이 머무는 관사에 송의 조서처럼 임시 봉안되었다 하겠다.

조서를 지닌 사신이 개경에 들어서면 국왕은 직접 혹은 태자를 보내거나 대신을 보내어 이를 영접하였다. 문종 17년(1063) 3월 거란이 대장경을 보내자 왕이 법가를 갖추어 서교에서 맞이하였다는 사례는 이를 보여 준다.<sup>41)</sup> 물론 대장경을 맞이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여겨진다. 대상은 다르지만 영대명조사의를 보면, 조서를 용정에 봉안 후 보고하면 국왕이 國中衆官 및 耆老와 함께 국문 밖에 나아가 맞는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2)</sup>

그렇다면 원접관의 안내로 회선관 혹은 선빈관에 도착한 거란사신을 고려에서는 어떻게 맞이하였을까? 이에 대한 기록 역시도 거의 없어 알 수 없으나 『고려도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사신단의 도착 전후 고려에서는 이들을 수행할 筵伴, 館伴을 정하였을 것이다. 연반은 사신을 맞는 의례를 주관하는데 연반은 왕명으로 정하였으며, 관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관반과 관련해 서궁이 남긴 기록을 보면, “고려에서는 매양 中朝에서 사신이 가게 되면 반드시 인재를 선발하거나 혹은 조공갔던 사람으로 관반을 삼는다.”라 하고

38) 『고려도경』 권27, 館舍 西郊亭

39) 『고려도경』 권27, 館舍 詔位

40)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大明詔使儀

41) 『고려사』 권8, 문종 17년 3월 丙午

42)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大明詔使儀

있다.<sup>43)</sup> 이를 볼 때 거란사신을 맞이하고 수행하는 관반도 이 같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sup>44)</sup>

『고려도경』에서는 고려에서 조서를 맞이하여 받는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예지 빈례 조에 전혀 보이지 않으나 이는 서공이 방문할 당시인 인종 대 전후 조서를 가진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동시에 그 절차 역시도 고려-송-거란의 삼각관계를 고려할 때 고려가 거란을 차별하면서 송과의 의례만 특정하여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sup>45)</sup> 따라서 서공이 『고려도경』 수조 조에 기록한 내용은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영복조조사와의 내용이 건덕전에서 진행되는 의례에서 시작되고 있는 점을 비교할 때 인종 이전단계의 빈례 내용 구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고려도경』 수조 조에서 정리하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있다. 迎詔-導詔-拜詔-起居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영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보이고 있다.

- ① 사·부가 조서를 받들고 순천관으로 들어가면 10일 이내에吉日을 택해 국왕이 조서를 받는다. ② 기일 하루 전에 먼저 說儀官을 보내어

---

43) 『고려도경』 권8, 人物 同館伴正議大夫守尙書兵部侍郎上護軍賜紫金魚袋 李之美  
44) 선종 대에 崔思諤는 서경부유수로 있으면서 왕이 서경에 행차하자 거란사신 王鼎에 대해 관반을 맡은 바 있다. 이를 보면 거란사신은 입경 후 서경에서 관반의 대접을 받으면서 객관에서 유숙하였던 듯하다.(『고려사』 권96, 열전9 제신 최사추) 한편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는 接伴官으로 종2품의 尹彦植과 同接伴官으로 정4품의 金富軾, 관반으로 종2품의 金仁揆와 동관반으로 정4품의 李之美를 소개하고 있다.(『고려도경』 권8, 인물) 이를 보면 적어도 송의 국신사가 왔을 때 집반·동접반과 관반·동관반으로 종2품과 정4품의 관원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거란사신을 맞이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틀은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된다.  
45) 김성규, 2010, 「3개의 ‘트라이앵글’: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에 관한 試論」 『歷史學報』 205, 역사학회

사·부를 만나게 한다. ③ 다음날 屈使가 순천관에 당도하여 도할관과 제할관이 조서를 받들고 채여 안으로 들어가면, 의장과 병갑이 앞에서 행렬을 영도하고, 사·부·관반 및 굴사가 동시에 말에 오르고, 下節이 그 앞에서 걸어서 가며, 상·중절은 말을 타고 뒤에서 따라간다. ④ 국관은 먼저 순천관 문밖에서 排立한다. 조서가 出館하기를 기다렸다가 당도하면 채배를 마치고나서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여 王府에까지 간다. ⑤ 廣化門으로 들어간 다음 左同德門으로 들어가 昇平門 밖까지 가서는 상·중절이 하마하고 引接·指使 등이 말 앞에서 걸어가는데 상절은 뒤에서 따라간다. ⑥ 神鳳門으로 들어가 閭闔門 밖에 다다라 정사와 부사가 말에서 내리면, 국왕과 국관은 차례로 迎詔하고 채배가 끝나면 채여가 들어가 會慶殿 문밖에 멎는다.<sup>46)</sup>

영조 단계에서 ①을 보면 10일 이내 길일을 택하여 受詔儀를 행한다고 있다. 이 내용은 이미 성종 9년 6월 송의 책봉사 광록경 시성무 등이 왔을 때 수조의를 행하는 날짜에 대해 음양설에 따라 길일과 길일을 택하였다는 대목과 연관된다.<sup>47)</sup> 서긍 등 일행이 온 때는 선화 5년 즉 인종 원년(1123)이었다. 이때까지도 수조의를 행하는데 길일을 택하였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만큼 음양론에 따른 택일이 관행이 되어왔음을 알려준다. 동시에 이러한 방식이 거란사신단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①의 사항은 영거란사신의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관사만 달랐을 뿐이지 원접관 및 관반의 안내 하에 거란사신단은 영은관과 인은관에 들어갔다 하겠다.

46) 『고려도경』 권25, 受詔 迎詔, “使副奉詔入順天館 十日內卜吉 王乃受詔 前期一日先遣說儀官與使副相見 次日遣屈使一員至館 都轄提轄官對捧詔入采輿內 儀仗兵甲迎導前行 使副館伴屈使同上馬 下節在其前步行 上中節騎馬後隨 國官先於館門外排立 候詔書出館 當道再拜訖 乘馬前導至王府 入廣化門 次入左同德門 至昇平門外 上中節下馬 引接指使等馬前步行 上節後從 入神鳳門 至閭闔門外 使副下馬 國王與國官以次迎詔 再拜訖 采輿入止會慶殿門外”

47) 『고려사』 권65, 지19 예7 賓禮 성종 9년 6월

영은관과 인은관에 들어간 거란사신단은 관사 내에 마련된 조서전에 조위를 마련했을 것이다. 『고려도경』에서 송 사신이 묵은 순천관에 使·副位, 都轄·提轄位, 書狀官位, 中·하절 자리 등을 정리하고 있었듯이 영은관 및 인은관의 관사 내에 거란사신을 위한 館廳도 구성되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sup>48)</sup>

관사에 도착한 거란사신단은 이튿날 무렵 먼 여정을 온 이들에게 고려에서 베푸는 첫 번째 연회를 받았을 것이다. 拂塵宴이 이에 해당한다. 불진연 기록도 거란사신단 관련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송이나 금의 사신을 맞이하는 사례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즉, 문종 32년(1078) 6월 기사일에 송의 국신사 일행에게 불진연을 베푼 바 있고,<sup>49)</sup> 명종 원년(1171) 7월에는 金の 詢問使 完顏靖 일행에게 이를 연 바 있다.<sup>50)</sup>

②를 보면 기일 즉 수조의례를 행하는 날 하루 전 수조의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관원으로 설의관이 보이고 있다.<sup>51)</sup> 그가 정사와 부사를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반 혹은 연반의 지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고려도경』에서 언급한 바 동관반의 지위에 있는 자였을 수도 있는데 의례를 협의하는 위치였던 만큼 지위가 관반에 이르거나 의례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관

48) 『고려도경』 권27 館舍 順天館

49) 『고려사』 권9, 문종 32년 6월 己巳

50) 『고려사』 권19, 명종 원년 7월 甲申. 송과 거란 및 금에 대하여 행한 불진연은 그 순서가 달랐던 듯하다. 송에 대해서는 회경전 혹은 건덕전에서의 수조와 연례가 끝난 뒤 관사에 돌아갔을 때 館會로 열린 반면, 금에 대한 불진연은 사신이 개경에 도착한 다음날 행해지고 있었다. 이 점은 금이 거란사신의례를 계승했었을 것임을 염두에 두면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도 도착한 이튿날 이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당개원례』 빈례 편에는 蕃主來朝遣使迎勞의 절차가 있는데, 불진연은 이와 관련되는 의식이었다 할 수 있겠다.

51) 희종 2년(1206) 4월 국왕이 책명을 받는 문제로 금나라 사신에게 행례소에 대해 협의한 바 있는데, 당시 大理卿 移刺光祖는 “冊命은 宣慶殿에서 받고 연회는 大觀殿에서 설하고, 望詔拜는 昇平門 밖에서 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를 보면 행례와 관련한 의논을 일차적으로 거친 것을 알 수 있다.(『고려사』 권21, 희종 2년 4월 癸酉)

원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선화봉사로 온 송 사신단과 관련하여 이들이 관에 머무는 동안 동관반이었던 이지미가 모든 일을 처결하였는데 예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 한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sup>52)</sup> 다만 조사를 맞이하는 의례의 경우 이미 빈례로 규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의관의 역할은 협의와 함께 의례 내용을 주지시키는 데 있었다 여겨진다.

설의가 이루어지면 ③단계에 보이는 바처럼 실제 수조의의를 행하는 날에 조서를 받들고 왕부에 가는 행렬이 구성되었다.<sup>53)</sup> 의장과 병갑의 인도, 조서가 든 채여를 받드는 도할관과 제할관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다음은 하절이 곁어서 가는 것이었다. 이어 말을 탄 사·부와 관반·굴사가 가는데, 사·부와 관반은 같은 열로 가고 굴사는 그 다음에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절과 중절이 말을 타고 따라가고 있다.

여기서 굴사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굴사는 『고려사』 예지에서는 영복조조사의와 영복조기복고척사의 및 『고려도경』에서 나타난다. 굴사의 경우 수조 의가 행해지는 당일 관사에 도착하여 도할관과 제할관이 조서를 對捧하여 채여 내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 역할이 보인다. 사·부 및 관반과 함께 말을 타고 거의 나란히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굴사는 館舍에서 조서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고려측 관원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sup>54)</sup>

52) 『고려도경』 권8, 인물. 혹은 동접반이자 상서예부시랑으로 있던 김부식이 맡거나 예부 혹은 예빈성의 또 다른 관원이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

53) 국홀이 아닌 경우는 대체로 結綵·插花·奏樂이 있어 화려함과 성대함 등을 모두 갖췄을 것이다.

54) 김성규는 굴사에 대해 복조사신이 묶는 객관에서의 관반과 비슷하게 공적 사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기존의 해석을 이어받고 있다.(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372~373쪽) 다만, 『고려도경』의 의례 내용을 보건대, 굴사의 직무가 수조가 진행되는 당일에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서를 인도하여 들이는 역할을 한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구체적 설명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④단계는 ③단계에서 정해진 행렬 구성이 순천관에서 나와 왕부 즉 궁궐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였다. ⑤와 ⑥은 조서와 함께 정·부사 등이 광화문-좌동덕문-승평문-신봉문-창합문까지 다다르고 창합문에서 국왕과 朝官이 조서와 정·부사를 맞이하여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II. 詔書 받기와 私禮

『고려사』에 정리된 영복조조사의는 의례 절차의 단계적 구분 없이 조사의라는 항목 하나로 조사를 맞는 예를 묶고 있다. 이와 달리 『고려도경』의 경우 조사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수조와 연례로 구성되어 있다. 『송사』나 『요사』의 경우 고려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관련한 큰 절차를 보면 『송사』에서는 高麗進奉使見辭儀라 하여 見儀-辭儀로 되어 있다.<sup>55)</sup> 『요사』에서는 이와 달리 高麗使入見儀-曲宴高麗使儀-高麗使朝辭儀로 되어 있다. 기본 구성은 현의-연의-사의로 짜여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의 경우 이와 달리 거란사신을 맞는 의례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이점에서 송나라 사신의 시각에서 정리한 『고려도경』의 수조 및 연례 부분은 고려에서의 거란 및 송 사신 맞이와 수조 등의 이해에 참고가 된다.

55) 『송사』 권119, 지72 예22 빈례4 高麗進奉使見辭儀. 현의는 사신이 황제나 국왕을 알현하는 의식이고, 연의는 사신에게 베푸는 연향, 사의는 귀국 전에 행하는 인사에 관한 의례를 말한다.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성규, 2000, 「宋代 東아시아에서 賓禮의 成立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72, 東洋史學會; 김성규, 2003, 「中國王朝에서 賓禮의 沿革」, 『中國史研究』 23; 김성규, 2012,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동양사학연구』 120; 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歷史學報』 214

『고려도경』에서 수조는 다시 영조·도조·배조·기거로, 연례는 私覲·燕儀·獻酬·上節席·中節席·下節席·館會·拜表·門餞·西郊送行으로 구성하고 있다. 매우 구체적으로 분절하여 의례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사』 세가의 기록에서도 거란의 조서를 받는 수조의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다. 『고려사』 찬자들은 영북조조사의 등의 내용으로 이를 대신하면서 대부분의 사례에 나타난 수조의의 내용은 생략한 것으로 보아진다. 더구나 영북조조사의에 나타난 수조의 해당 부분조차도 그대로 실었다 보기 어렵다.

영북조조사의를 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고려측 국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맞고자 자리하는 [就坐] 내용이 나온다. 『고려사』 예지에 전하고 있는 영북조조사의에서는 ⑥ 단계의 신봉문으로 들어가 창합문 밖에 다다라 정사와 부사가 말에서 내린다고 한 부분까지가 생략되었던 듯하다. 그리고 실제 영북조조사의의 절차를 보면 건덕전에 나와 앉은 국왕과 함께 합문부사, 재신과 시신, 합문 남반이 차례대로 서서 정렬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았다.

가) 국왕이 건덕전에 나와 앉으면, 합문부사 이상이 먼저 궁전 뜰로 들어가 肅拜한다. 다음으로 宰臣·侍臣·關門·南班이 숙배하고 敍立한다.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따라서 『고려도경』 영조를 토대로 본다면, 국왕 및 재신 등이 서립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접반 및 관반과 굴사 등과 함께 회선관 등의 관사로부터 출발한 거란사신은 개경 황성 20개 문 중 남대문에 해당하는 광화문으로 들어와 좌동덕문을 통과하여 승평문으로 들어왔다 여겨진다. 여기서 사신단 중 상·중절은 하마하여 걸어서 사·부를 따랐을 것이다. 이어 사·부는 신봉문으로 들어가 창합문 밖에 이르러 하마하여 국왕 등

이 맞이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sup>56)</sup>

나) 그 후 굴사·관반·집사가 함께 殿庭에 들어와 숙배를 마치면 합문 사인이 聞辭位에 나아가, “북조 사신이 이미 합문에 도착하여 삼가 聖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아뢴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이렇게 가)의 단계에서처럼 국왕 등이 건덕전과 뜰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란사신단을 인도해 온 굴사·관반·집사가 건덕전 전정에 들어와 절을 올려 소식을 알리는 장면으로 영복조조사와의 수조는 시작되었다. 나)단계에서 합문사인이 문사위에 나아가 “북조 사신이 이미 합문[참합문]에 도착하여 성지를 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 아뢰고 있는 장면은 이를 알려준다.

참고로 합문사인이 문사위에 나아가 아뢰는 내용은 『고려도경』 영조 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조 조에 없다고 하여 영복조조사와의 송의 조사를 대하는 빈례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어서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도착과 함께 국왕에게 아뢰고 국왕이 조서와 사·부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영조의 마지막 부분과 도조 첫 부분으로 대신 된 듯하다. 그것은 『고려도경』의 경우 서궁이 제할관의 신분으로 송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영복조조사와의 경우는 고려왕조의 입장에서 정리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

56) 때로 국왕은 승평문까지 나와서 영조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 명종 2년 5월에 금의 조서를 맞이한 일이 보인다. 즉, 임신일에 도착한 책봉사 일행에 대해 임오일에 승평문에서 영조하고 대관전에서 책문을 받은 바 있다.(『고려사』 권19, 명종 2년 5월 壬申·壬午) 그런데 이에 앞서 의종 2년 무진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책봉례 때 임금이 승평문 바깥에 나가 사신을 영접하지 않는 관례가 시작되었다는 기록도 있다.(김용선 편저, 2001, 『윤언이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편 위의 승평문까지 다다른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도경』 권25, 受詔 迎詔 조 참조.

여기서 이 장면과 연결되는 『고려도경』의 설명을 보자. 사·부가 말에서 내리면 국왕과 國官이 차례로 영조하는데, 再拜를 마치면 조서가 봉안된 采輿는 회경전 문 밖으로 들어와 멈춘다 하고 있다. 이 같은 면이 영복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다) 閣門使가 “들어보내라[屈]”는 왕의 말을 전하면, 합문의 관원들은 사신과 조서함을 지닌 사람들을 앞장서 인도해 中門으로 들어가게 한다. 사신은 殿門의 서쪽으로 나아가고, 국왕은 문의 동쪽으로 나가, 相揖하고 전정으로 들어간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국왕의 ‘屈’이라는 말을 합문사가 傳宣하면 합문원의 인도 하에 조서함은 회경전 전문 중 중문으로 들어가고 사신은 서쪽 문을 취하고, 국왕은 전문 동쪽으로 나가 서로 읍하고 전정으로 들어간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서함을 두는 곳에 대한 정리가 없다. 관련 내용이 축약 혹은 빠진 것이라 여겨지는데 『고려도경』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조서를 실은 채여가 회경전 전문 밖에 멈추면 도할·제할관이 조서를 捧出하여 幕位에 奉安하였으며, 사·부는 잠시 쉰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조서의 봉출과 막위 봉안의 내용이 생략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례 내용 일부가 빠진 듯하다. 영복조조사를 보면,

라) 사신이 傳命位로 가서 남향하여 立定하면, 국왕은 서향하여 재배하고 皇帝體를 묻는다. 사신이 답을 전하면, 국왕은 拜舞하고 절하며, 사인은 재신 이하 侍臣에게 배무하고 절을 하라고 외친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라 하고 있다. 곧바로 사신이 전명위로 가서 남쪽을 향해 입정하고 국왕은 서향하여 재배한 뒤 황제의 안부를 묻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라)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른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고려도경』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막위에 봉안된 조서를 중심으로 국왕은 서향하여 섰다가 사·부와 함께 회경전 중문으로 들어가고 다시 조서는 회경전 전정에 마련된 香案에 봉안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를 고려할 경우 라)의 장면은 조서가 향안에 올려지면 사신은 향안을 중심으로 북쪽 위 [北上] 에서 남면하는 전명위를 취하고 국왕은 서향하여 황제의 성체에 대해 물었다라 하는 것이 당시 현장 모습이 될 것이다.

한편 이 단계는 영복조조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바로 고려국왕과 詔使의 면위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sup>57)</sup> 이를 보면 사신은 전명위에서 남향 입정하고 국왕은 서향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영대명조사의 경우 국왕은 북면하고 사신은 남쪽을 향해 서서 ‘制’를 가져왔다하고 이에 국왕과 諸臣이 예를 취하면 조서의 개독 등이 이루어졌다.<sup>58)</sup> 남북면위가 확인되는 것이다. 반면 영복조조사의 경우나 『고려도경』 수조 조의 배조 부분을 보면 향안을 중심으로 사·부 혹은 사신은 북상에 서서 남면하고[位北上面南立] 국왕은 서향[面西立]하고 있어 차이가 확연하다. 앞장에서의 ②를 보면 선화봉사의 사·부는 이미 고려에서 보낸 설의관을 통해 의례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면위에 대해 논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려의 의도가 설의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당시 빈례의 내용이 고려-송-거란의 관계가 함께 반영되었을 것을 염두에 두면 국왕의 북면이 아닌 서면은 당시 거란 측에도

57) 고려가 북조 조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취한 면위 문제를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이범직, 1983, 앞의 논문; 奥村周司, 1984, 앞의 논문; 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박윤미, 2015, 앞의 논문

58) 『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大明詔使儀

송 측에도 통용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범직 및 오쿠무라 슈지는 이에 대해 고려의 주체성이 반영된 것이며, 臣禮를 기피함으로써 거란 멸시관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성규는 이에 대해 거란이 피척봉국인 고려에 대해 신례를 면해주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고, 거란의 동-서 축을 중시하여 동면을 상으로 하는 습속 즉 君主東面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보았다. 한편 고려 전기 면위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박윤미는 이에 대해 고려국왕의 서면이 오히려 신하로서의 면위라 보는 김성규의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고려사』 예지 가례 조의 王太子稱名入府儀에 나온 왕태자 수명위의 서향 설치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국왕의 면위가 실제로는 서면과 북면을 오가며, 자리 역시 수명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보았다. 즉 사신에 대해 서면하여 재배하고 황제에 대해서는 북면하여 배무배하는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적인 예제 해석의 면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처럼 사·부가 북상에서 남면하고 국왕이 동쪽에 서서 서면한 것이나 私禮 및 私覲을 행할 때 국왕은 동쪽, 사·부 등은 서쪽에 서는 것은 영복조조사이나 『고려도경』 수조 조의 배조나 연례의 사적에 그대로 다시 반영되고 있다.<sup>59)</sup> 그렇다면 북조조사를 맞을 때나 송사를 맞을 때 거의 같은 내용이 행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사의 受詔 때 동-서나 북-남의 대칭이 아닌 남면-서면이라는 비대칭적 면이 보이고 반면 국례 중 私禮를 행할 때 국왕 동쪽-사신 서쪽의 대칭적 면을 보인 것은 고려 예제의 특수한 면이라 할 수 있다.<sup>60)</sup>

59) 『고려사』 권 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使臣先行致辭 王答拜 王東邊使臣西邊 坐定”; 『고려도경』 권26, 연례 私覲, “王既受詔已 王與使副 少休于次 王位東 使副位西”

60) 『고려도경』 수조 조의 導詔를 보면 국왕은 서향하여 섰다가 사·부와 나란히 중문으로 인도해 들어간다 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쪽에서 서향

다음 단계는 영복조조사 수조의 중 마지막 절차 중 하나로 『고려도경』에서는 배조에 해당한다.

마) 이것이 끝나면, 사신은 황제의 명이 있다고 말하며 국왕은 재배한다. 사신이 국왕에게 조서를 전달하면, 국왕은 재신에게 주며, 재신은 무릎을 꿇고서 받아 持函員에게 준다. 국왕은 배무하고 절을 하며, 사인은 재신과 시신에게 배무하고 절을 하라 한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이를 보면 사신에 의해 황제의 명 전달이 이루어지고 조서 전달까지가 마무리되는 것이 확인되며, 이어 국신물색의 수납과 사신의 퇴장이 있게 됨을 본다.

바) 이것이 끝나면, 國信 物色이 뜰을 통과하며 국왕은 재배한다. 이것이 끝나면, 합문원이 사신을 인도하여 전문을 나간다. 국왕은 전문 밖으로 나가 읊을 하며 보낸다. 합문이 사신을 인도하여 翰林廳의 막사에서 접대하는 동안 국왕은 잠시 어전문 안으로 들어가 조서를 본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겠는데, ‘主東客西’의 면을 중시한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한편, 고려 측에서 수조할 때 군주가 서면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는가 한다. 김성규의 견해에 따르면 거란은 서쪽을 중시하여 동면하는 것을 우선하였다.(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이를 고려하면 성종 15년 3월 거란의 책봉이 있을 때 서교에 단을 쌓았다는 것도 그러한 거란의 예제 상 방위 의식을 반영한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송의 사절단에 대해 빈례는 상대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설의관을 통해 의례절차에 대한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거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면이 반영되면서 문종 3년 정월 병오 때부터는 책봉을 남교에서 받되, 건덕전에서의 수조는 전명위를 북위를 상으로 하여 남면하도록 설치하고 국왕은 고려의 예제 상 방위의식에 따라 서면하도록 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를 고려하면 영복조조사는 문종 대에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조사의의 가장 큰 부분은 국신 물색에 대한 국왕의 수납 확인과 함께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고려도경』 수조 조에서는 국신물색의 통과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제할관의 신분이었던 서공이 보지 못한 장면이거나 생략된 것일 수 있다 여겨진다.

다음 단계로는 지금까지의 국례로서 조서를 맞이하는 빈례의 내용이 일단락되고 이어 사신과 3절이 국왕에게 행하는 私禮가 이어지게 된다.<sup>61)</sup> 『고려도경』 수조 조에서는 이 단계로 황제의 성체를 묻는 기거와 연례조의 私覲<sup>62)</sup>으로 이어지고 있어 차이가 있다. 다소 길지만 그 내용을 비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영북 조조 사의	私禮	使臣	다음으로 합문사가 사신의 精饒物狀을 올리면 왕이 答傳하는데 이를 마치면 물색이 전정을 통과한다. 합문사가 사신의 參狀을 올리면 왕이 復狀한다. 합문원이 전문 밖으로 안내하여 이르면 왕은 殿門을 나가 서로 읍하고 전 위로 들어간다. 사신은 재배하고 奏聖體하고 또 재배한다. 한 걸음 나아가 致辭하고 다시 재배한다. 이것이 끝나면 就座한다.
		上中節	그 후 사인이 上中節의 참장을 올리고, 사인이 인도하여 拜位에 자리하게 한다.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면 사인은 “재배, 주성체”라 한다. 사인은 “재배하라” 하고 한걸음 나아가 치사하도록 한다. 사인은 “재배하라” 한다. 합문사가 “객성에서 차와 술과 음식을 내리라는 분부가 계셨다.”고 전하면, 사인은 “재배하라”한다. 사인이 인도하여 문 밖으로 나가게 하면, 국왕은 자리로 간다.
		下節	그 뒤 합문원이 하절을 인도해 전정으로 들어오게 하면, 하절은 재배한 후 주성체하고 재배한다. 합문사가 “所司에서 술과 음식을 내리라는 분부가 계셨다.”고 전하면 재배하고 문 밖으로 나간다.
『고려도경』	起居	國王	사·부가 導詔하여 전정에 이르면 국왕은 재배하고 일어나 자리를 피하며 친히 問聖體하면 使 또한 자리를 피하며 몸소, “近離闕下 皇帝聖躬萬福”이라 답한다. (중략) 각기 자리로 돌아가 배무함이 수조의 때와 같다.

私謁	使臣	왕이 조서를 받고 나면 왕과 사·부는 자리에서 잠시 쉰다. 왕은 동쪽, 사·부는 서쪽에 자리잡는다. 贊者가 사·부의 기거 상황을 왕에게 고하면 왕은 소개 보내어 복명한다. 그리고 引接官은 좌우로 나뉘어 왕과 사·부를 인도하여 會慶殿 가운데로 나가 서게 한다. 마주보고 읍하고 나면 왕은 동쪽 기둥에 서고 사·부는 서쪽 기둥에 서는데, 각기 褥位가 마련되어 있다. 왕과 정사가 서로 향해서 재배가 끝난 다음 각각 몸을 좀 앞으로 내어 문안의 교환을 끝내면 다시 재배하고 정사는 조금 물러선다. 부사는 정사의 자리에 서서 왕과 마주 배례하는 것을 처음의 예와 같이 하고 각각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한 뒤에 각각 잡았던 자리로 가서 그 곁에 선다.
	上節	상절관들은 榜子를 내고 참례하는데 都轄官과 提轄官 이하는 배례하지 않고 다만 몸을 굽혀 왕에게 읍하고 왕 역시 몸을 굽혀 그것에 답하면 물러나 동쪽 행랑에 선다.
	中節	다음은 중절을 인도하여 뜰 아래에서 참례시키는데, 네 번 배례하면 왕은 몸을 조금 움직여 읍으로 답례하고 그것이 끝나면 물러나서 서쪽 행랑에 선다. 왕과 정사·부사는 좌석으로 가서 앉고 상절과 중절 역시 그렇게 한다.
	下節	다음은 하절을 舟人과 함께 인도해오는데 역시 뜰 아래에서 여섯 번 배례하고 문의 동서 두 편으로 나뉜 차레에 따라 북쪽을 면해 있는데, <b>동쪽이 상석이다.</b>

위의 표를 보면 영복조조사에 없지만 『고려도경』에서 확인되는 것

- 61) 이 부분을 私禮라 한 데에는 영복조기복고착사의에서 같은 장면에 대해 ‘行私禮’라 하여서이다. 이에 대해 김성규는 ‘개인(사절단) 의례’의 성격이 공적인 ‘국가(황제) 의례’와 달랐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384쪽) 박윤미는 이를 토대로 영복조조사의를 크게 ‘公禮 - 幕間 - 私禮’로 구분하기까지 하였다.(박윤미, 2015, 앞의 논문, 32쪽) 어쨌든 사신의 公私禮는 구분되어 행해진 듯한데, 가령 고종 6년 정월에 肅眞이 보낸 蒲里堡 등이 의관을 갈아입고 入殿하여 私禮를 행하면서 다만 읍례만 하고 배례하지 않았다 한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려사』 권22, 고종 6년 정월 辛卯)
- 62) 私謁은 『논어』 鄉黨편에 “執圭 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 下如授 勃如戰色 足如有循 享禮 有容色 私謁 愉愉如也”이라 하여 군주를 사사로이 만나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곧 私禮와 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있다. 기거의 절차이다. 여기서의 기거는 황제의 안부를 묻고 대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황제 성체에 대해 묻는 것은 『고려도경』 수조 조 배조에 ‘躬問聖體’라 하여 일차 나온 바 있었다. 그런데 기거 조에서 국왕은 한차례 더 사신과 황제 성궁에 대해 기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조서를 받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영복조조사의의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과 『고려도경』 상의 기거와 사적 부분은 일정부분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Ⅲ. 燕禮와 辭儀, 그리고 餞送

영복조조사의에서는 조사 사절단에 대해 별도로 연향을 베푸는 의식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았다. 조서를 받는 의식과 사례가 마무리된 뒤 합문사가 객성에서 차·술·음식 [茶酒食]을 내리라는 분부가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사신과 삼절이 자리에 위치하여 차등적으로 차와 술, 음식 등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대하는 거란 조사에 대해 성대한 연례가 없었을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보자.

선종 6년(1089) 9월 정축(10)에 요사를 건덕전에서 향연한 사례의 경우 이미 거란 사절단은 이보다 앞선 을해일(8)에 개경에 도착하여 건덕전에서 天元節을 축하한 뒤였다.<sup>63)</sup> 친원절은 선종의 탄일로 9월 경자일(23)

63) 『고려사』 권10, 선종 6년 9월 丁丑.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 고려 국왕의 생신을 하례하는 것은 목종 즉위년 12월의 기록부터 확인된다. 거란은 성종의 천추절을 축하하기 위해 千牛衛大將軍 耶律迪烈를 보냈던 것이다.(『고려사』 권3, 목종 즉위년 12월) 하지만 이미 같은 해 10월 무오일에 성종이 흥서하여 본격화되지는 못하였다.(『고

이었다.<sup>64)</sup> 또 선종 7년 9월 경진일(19)에 행한 건덕전 향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앞서 8일 전인 신미일(10)에 이미 利州管内觀察使 張師說 등 31인이 개경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sup>65)</sup> 이와 같이 선종 6년 9월과 7년 9월의 사료를 보면 고려에서 거란사절단에 대해 연향을 베푸는 예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란사신에 대한 연의는 어떻게 갖춰져 있었을까? 영북조조사의 중 연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자.

사) 이것이 끝나면, 사신에게 차를 내는데, 첫 잔은 국왕이 친히 권한다. 그러면 사신도 다시 국왕에게 잔을 권하고 두 번 절을 한 후 자리로 돌아가 차를 마신다. 이것이 끝나면, 서로 읊을 하고 다시 자리로 가며 이어 국왕은 중사와 하사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준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그러나 이 내용은 너무 소략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서 私禮로부터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사신과 상·중·하절의 자리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 전내인지 전정인지 혹은 전문 밖에 있는가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선종 7년 9월 사료에 보듯 선종은 거란사신을 건덕전에서 再宴한 데다가 三節人 등도 전내에 앉게 하였다. 이에 좌우 유사는 왕에게 사자에 대한 재연도 전에 없었던 일이며, 삼절에 대해 전내에 취좌하게 한 것도 들어본 바가 없는 일이라 간

---

려사』 권3, 성종 15년 10월 무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전기 국왕 관련 기념일 특히 절일과 거란의 고려국왕 하생신사에 대한 정리로는 다음을 참조. 한정수, 2013, 「고려 전기 정기적 국왕 행사의 내용과 의미」 『역사와 현실』 87, 472~476쪽; 이승민, 2013, 앞의 논문; 김성규, 2013, 「宋·遼·金 및 高麗帝王生日考」 『동양사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64) 『고려사』 권10, 선종 원년 8월

65) 『고려사』 권10, 선종 7년 9월 辛未·庚辰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sup>66)</sup>

이 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사신단에 대한 연례가 적어도 한 차례 반드시 전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자리배치 [就坐]의 경우 사신은 전내 즉 건덕전 내에 있으나 최소 삼절인 모두가 전내에 앉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영복조조사와의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하절의 경우 전정으로 들어와 奏聖體·再拜·出門으로 이어졌고, 상·중절은 呈參狀·就拜位·再拜·奏聖體·致辭·出殿門을 하였다. 상·중절이 전내에 있었던 지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비록 금의 사신단에 대해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종 8년(1178) 정월 국왕생신축하사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명종 8년 정월 기유(14)에 금에서 僕散 懷忠을 보내 고려국왕의 생신인 乾興節을 축하하였다. 이에 기축일에 금사를 향연하였는데, 舊制에서는 중·하절인은 전문 밖에서 賜酒하고 親參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신이 향연에서 전정에 들어와 拜謝하기를 청하니 이를 따랐다는 것이다.<sup>67)</sup> 이를 통해 본다면 적어도 상절까지는 전내에 자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sup>68)</sup>

더구나 사)의 기록을 보면 국왕과 사신 사이에 進茶와 還酬이 있고 중·하절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준 것만이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면 영복조조사의 연례 부분 역시 상당히 많은 축약이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도경』 연례 조를 다시 보자. 연례 조는 사적·연의·헌수·상절석·중절석·하절석·館會·배표·門餞·西郊送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절석 부분까지는 궁궐에서의 연의였고,

66) 『고려사』 권10, 선종 7년 9월 庚辰

67) 『고려사』 권65, 지19 에 빈례 명종 8년 정월 기유·기축. 다만 기축일의 경우 명종 8년 정월에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명종 대이기는 하나 연도 미상인 듯 하다.

68) 다만 송의 사절단에 대한 연례에서 삼절인의 취좌는 요·금의 사신단과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상절석이나 중절석, 하절석 등이 회경전 전문 내에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다.(『고려도경』 권26 연례 상절석·중절석·하절석)

관사에서 연회로 館會가 열렸다. 배표는 사신을 통해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전달하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전은 배표 후 궁문인 신봉문에서 행한 잔치였다. 성격 상 배표와 문전은 辭儀에 해당한다. 서교송행 부분은 사신을 伴送하는 마지막 절차였다. 서궁이 이를 연례로 묶는데에는 이 과정에 국왕의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면을 고려해서인 듯하다.

따라서 『고려도경』 연례의 내용은 영복조조사에서 소략히 다루어진 연의의 내용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례 조 연음은 연음을 하기 위해 고려측 국왕과 守官·國相·尙書 이상이 회경전의 東榮 왕의 뒤에 서고 나머지 관원들은 문무가 동서 兩序로 나뉘어 殿庭 가운데에 서 있는 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송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서궁은 이때 갖춰진 儀器와 果蔬, 肴饌, 儀仗 등이 정결하면서도 화려 엄숙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연음 조가 이렇게 진설과 위차에 대한 묘사에 그친 반면 실제 향연 절차는 獻酬 조에서 확인된다.<sup>69)</sup>

이를 보면, 국왕이 회경전에서 사·부에게, 사·부는 국왕에게 相揖하고 술을 따르는 헌수와 회례가 세 차례 진행된 뒤 常禮에 따라 15차례, 선물하사 후 다시 10차례까지 헌수·회례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헌수는 밤중이 되어서야 끝났고 그 이후 사절단이 관사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다.

서궁은 연음이 밤중까지 이어졌다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시간은 언제쯤이었을까? 선종 6년 9월 정축의 기록을 보면 거란사신을 건덕전에서 향연한 것이 확인되는데, 당시 선종이 지은 賀聖朝詞에서 시적 표현이

69) 『고려도경』 권26, 燕禮 獻酬, “王與使副既就席坐 王遣介告使副曰 欲親起酌酒爲勸使者固辭至於再三 乃從之 各避席起立 對揖訖 執事者以使爵至王前 王跪執尊以酌使者鄰行而前 使亦跪受爵訖 復以爵授執事者 各復位 坐既定 飲訖起 躬身對揖 略敘謝意 王又親酌副使酒 如使之禮 使副既受王獻畢 復親酌酒以酢王如初禮 酒三行 乃如常儀 酒十五行乃中休於次 少頃再就坐 自使副而下 送襲衣金銀帶各有差 酒再十餘行 夜分乃罷 王送使副出于殿門外 三節人以序行馬歸館”

기는 하나 ‘三更이 되려는 데도 노랫소리 드높다’라 하고 있다.<sup>70)</sup> 물론 사신이 올 때마다 이같이 삼경 전후까지 연음이 이어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신에 대한 厚待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밤중인 삼경 무렵까지 이어졌다 할 수 있을 듯하다.<sup>71)</sup>

한편, 송 사절단의 경우 왕부 즉 궁궐에서의 연의가 끝나면 사·부와 삼절인은 차례에 따라 관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송 사절단의 경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사에서 다시금 왕이 관원을 보내 열어주는 잔치가 있었다. 송 사절단에게 행하는 불진연은 조서의 전달이 끝난 뒤에 관사에서 행해졌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온 이들에게 곧바로 거란사신단에 게처럼 불진연 혹은 불진회를 베풀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문종 32년(1078) 6월 갑인(12)에 개경에 도착한 송의 국신사 등은 순천관에 들어가 머물렀고, 정묘(25)에 수조의를 행하였으며 기사일(27)에 불진연이 이루어졌다.<sup>72)</sup> 반면 명종 원년(1171) 7월 계미(10)의 경우 금에서 詢問使 完顏靖 등이 왔는데 이들에 대한 불진연은 도착 다음날인 갑신일(11)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사신이 참례치 않았다 하였다. 이어 기축일(16)에 이르러서야 대관전에서 수조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sup>73)</sup>

그런데 거란이나 금의 사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우나 송나라 사절단의 경우 불진회를 시작으로 5일에 한 번씩 연회를 차리고 24절기나 한식과 같은 명절에 해당하는 節序가 있는 경우 예가 좀 더해졌

70) 『고려사』 권10, 선종 6년 9월 丁丑

71) 거란사신에게 酒宴을 베푸는 것은 세 차례 정도까지도 열렸고 그것은 밤중까지 이어지곤 하였다. 이에 문종 12년 2월 내사사인 지동공시독사 崔尙이 아뢰는 내용을 보면, “貴朝에서는 객사를 인견함에 밤이 되도록 술을 권한다 하더니 이번에 와서 보니 예약이 모두 중화와 같은 것은 탄미하여 마지않는 바이다.”라는 말을 거란사신 王宗亮이 남겼다고 전하고 있다.(『고려사』 권8, 문종 12년 2월 戊午)

72) 『고려사』 권9, 문종 32년 6월 甲寅·丁卯·己巳

73) 『고려사』 권19, 명종 원년 7월 癸未·甲申·丙戌·己丑

다 하였다. 예컨대 문종 9년(1055) 2월 무신일은 한식이었는데 이때 송의 상인이나 탐라국 수령을 향연을 베푼 바 있었다.<sup>74)</sup>

이렇게 본다면 거란사신이 머물렀던 객관에서조차 불진연을 비롯한 관사에서의 연회 또한 빈례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도경』에 준해 본다면 사·부와 국관 및 伴筵 및 館伴 등은 사·부를 중심으로 위치가 정해졌을 것이다. 사·부가 가운데에 좌우로 앉고 국관·반연·관반은 동서로 나뉘어 客位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또한 송 사절단 중 도할·제할 이하는 동서의 序에 앉으며 중·하절은 양쪽 행랑에 앉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란 사절단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된다. 술은 모두 15차레 오갔던 것이 확인되는데, 거란사신에 대한 연회가 밤늦게까지 전개되었었다는 점을 보면 주연은 매우 길었다 하겠다.<sup>75)</sup>

『고려도경』 연례 조를 보면 영복조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례 절차가 보인다. 배표가 이에 해당한다.<sup>76)</sup> 배표는 본래 중국 황제의 표문을 받는 일을 말하는 것이나 서공이 쓰고 있는 배표의 예는 이와 달리 고려

---

74) 『고려사』 권7, 문종 9년 2월 戊申. 5일에 1회씩 연회를 차린다 한 대목은 송에서 5일마다 행하는 大起居에 고려사절단이 참여하는 의식을 연상케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규, 2001, 「入宋高麗國使의 朝貢 儀禮와 그 주변」 『전북사학』 24, 전북사학회 참조.

75) 『고려도경』 권26, 燕禮 館會. 관회 조에서는 이와 함께 過位禮도 행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왕이 주최하는 것이기 보다는 관반이 서신으로 사·부를 초청하여 연음하는 것으로 삼절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다. 이것이 끝난 며칠 후에는 사·부가 관반을 초청하여 송의 황실에서 가져온 것들을 관반 등에게 나눠주었다. 관회는 이렇게 연향의 주고받기, 선물의 주고받기 등이 행해진 자리였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란사신 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였는지는 명확치 않다.

76) 『고려도경』 권26, 燕禮 拜表, “使者宣命禮畢 乃以書告行 欲赴天寧節上壽之意 王遣介致書懇留 使者固辭 王卜日持書 告以拜附表章 至日使副率三節入至王府. 王迎揖至會慶殿 庭中設案列褥 位如受詔之儀 王望闕再拜訖 搢笏跪 執事以表授王 王捧表郟行 奉于使 使跪授訖 以表授副使 置表於引接官 然後就席 至會罷 乃以表匣置采輿中 兵仗迎導前行 歸館”

국왕이 송의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을 사신에게 주어 보내는 의식인 듯하다. 『고려사』에서는 사신에게 주어 보내는 표문 자체에 대해 附表라 하고 있다.<sup>77)</sup> 인종 4년(1126) 10월의 기록을 보면 배표와 관련한 의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인종이 금의 사신을 大明宮에서 전별할 때 附回表하여 사례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 중 이 같은 예 하나하나가 요를 사대하던 옛 제도에 의한 것 [事遼舊制] 이라 덧붙이고 있다.<sup>78)</sup> 따라서 배표의 예는 거란사신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 하겠다.

『고려도경』의 기록을 보면, 이 같은 배표연이 끝난 후에는 신봉문에서 왕과 사신단이 행하는 전별연이 이어졌다.<sup>79)</sup> 전별연은 문종 12년(1058) 2월 무오일의 기록을 보면 西郊에서도 행하였던 듯하다. 거란사신 王宗亮이 “郊餞 酒宴으로 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0)</sup> 인종 4년(1126) 10월 무술의 기록을 보더라도 거란에 대한 사대의 예를 행하는 과정에서 전별연과 부회표가 이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sup>81)</sup>

그런데 영복조조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매우 간단하게 의례의 마지막 장면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이것이 끝나면, 사신은 두 번 절을 하고 앞으로 나가 致辭를 행하고 두 번 절을 한다. 그러면 합문원은 그를 인도해 전을 내려와 전문 밖으로

77) 충렬왕 28년 8월 갑자의 기록을 보면, 백관이 예의를 갖추어 賀聖節表를 배하고 迎賓館에 보냈는데, 拜表禮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려사』 권67, 지21 예 가례 진대명표전의 충렬왕 28년 8월 甲子) 하지만 최소 서공의 『고려도경』을 볼 때 인종 대 이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8) 『고려사』 권15, 인종 4년 10월 戊戌

79) 『고려도경』 권26, 燕禮 門餞, “拜表宴罷 乃於神鳳門張帘幕 設賓主之位 王與使副酌別訖 立於席之側 先引上節立于前 王親酌別酒一巨觥 致辭而退 次引中節立于階階 下節立于階下勸酒 如上節之禮 退出門外 候使副上馬 三節以次從行 歸館”

80) 『고려사』 권8, 문종 12년 2월 戊午

81) 『고려사』 권15, 인종 4년 10월 戊戌

나간다. 국왕도 전문 밖으로 나가 읍을 하며 전송하고, 사신은 객관으로 돌아간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빈례 迎北朝詔使儀)

사신의 재배와 치사, 출전문과 국왕의 揖送이 이어지고 사신단은 객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리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고려의 입장에서 상국 사신을 대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 해도 소략하다는 평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한편 문종 12년 2월 무오일에 내사사인 지동공시독사 최상은 거란사를 맞이하는데 밤늦게까지 횃불을 든 徒隸들이 홀옷을 입고 고생하는데 다 거란에서는 잘 쓰지 않는 횃불을 쓰고 있다는 거란사 왕종량의 지적을 인용하여 개선안을 올린 바 있다. 그 중 마지막 부분을 보면, 宴好의 예는 낮에만 행하고 辭歸의 예는 會朝 즉 조회 때에 행하자 하였다.<sup>82)</sup> 사귀의 예는 곧 辭禮 혹은 辭儀에 해당하며, 歸禮는 말 그대로 귀국하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서공이 정리한 배표와 문전은 사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듯하다.

서공은 연례 조의 마지막 절차로 서교송행을 기록하고 있다. 배표-문전 이후 귀국하는 사신들을 보내는 절차였다. 영복조조사에서 이 부분은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로 郊餞과 送別이 있었음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문종 12년 2월 무오일의 기록에서는 “전일 거란사 왕종량을 伴送할 때 밤에 금교역에 도착하였다.”라 한 내용이 이를 말해 준다.<sup>83)</sup> 서교송행의 예를 보면, 사신을 보내는 데에는 국왕은 직접 가지 않으나 서교정에 國相을 보내 酒饌을 갖추어, 사·부, 상·중절, 하절과 함께 酒十五行을 마치도록 하였다. 이후 접반관이나 송반관 등은 서교정에서 마지막으로 사신단을 보내는 일을 하였다.<sup>84)</sup> 거란사신단 역시도 회

82) 『고려사』 권8, 문종 12년 2월 戊午

83) 위와 같음.

선관을 출발하여 서교정에 이르러 마지막 전별연을 받고 반송관과 함께 금교역으로 하여 귀국하였던 듯하다.<sup>85)</sup>

## 맺음말

이상을 통하여 고려가 거란사신을 어떻게 맞이하였는가와 관련한 외교의례 즉 영거란사신의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사』에 산재된 단편적 기록을 모으고 영북조조사의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고려도경』의 수조 및 연례 등을 토대로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재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거란사신을 맞는 전체 빈례 내용을 요약하면서 확인한 사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거란사신의 입경부터 객관에 머물렀다가 조서를 받는 의례가 있는 당일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부 및 삼절로 구성된 거란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고려에서는 예빈성과 함문의 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사신 접대를 위해 원접관과 연반·관반을 두고 있었다. 사신단은 서경을 거쳐 금교역-서교정으로 들어와 현종 2년 설치된 회선관을 원류로 한 영은관에서 머물렀으며, 객관에는 使·副 등의 자리와 조서를 놓는 자리 등 館廳이 갖춰져 있었다. 여기서 사신단은 고려조정에서 베푸는 불진연

84) 『고려도경』 권26, 燕禮 西郊送行, “使副回程 是日 早發順天館 未開 抵西郊亭 王遣國相 具酒饌于其中 上中節位于東西廊 下節位于門外 酒十五行乃罷 使副與館伴立馬于門外 斂別 館伴就馬上 親酌以勸 使者飲畢 各分袂 先是 與接送伴官 到館即相別 及回程 於此復與之相陪 以迄群山島放洋也”

85) 金郊驛樓記는 비록 조선 초 權近이 쓴 기문이기는 하나 그 내용 중 朝使가 왕래할 때 매번 이곳에서 묵는다고 한 대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동문선』 권80, 記 金郊驛樓記)

을 받았다. 건덕전에서의 수조가 이루어지기 전 고려에서는 說儀官을 보내 의례에 대해 설명해 협의하였으며, 수조일은 택일 과정을 밟았다. 수조일 당일이 되면 사신단은 광화문-좌동덕문-승평문-신봉문-창합문까지 다다르고 창합문에서 국왕과 朝官은 조서와 정·부사를 맞이하여 재배하였다. 이는 사신을 맞는 빈례 중 迎勞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어 II장에서는 거란사신을 맞는 의례의 하이라이트라 할 건덕전에서의 수조 과정과 국왕과 사신단 간의 私禮를 정리하였다. 주지하듯 이 단계의 빈례는 영복조조사의로 정리된 바 있으나 상당부분은 생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제의 조서는 삼문으로 이루어진 전문 중 중문으로 들어왔고 전명위는 남향으로 마련되었다. 사신은 서문, 국왕은 동문으로 전정에 들어왔고, 국왕의 수조는 서향한 채로 이루어졌다. 이는 송 사신, 금의 사신에게도 같은 면위로, 이미 설의관을 통해 알려졌다는 점에서 고려의 예제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私禮가 이루어질 때 국왕은 동쪽, 사·부는 서쪽에 자리하였다. 이 단계는 見儀에 해당한다.

거란사신 관련 의례의 마지막으로는 이들에 대한 연례와 辭儀, 그리고 전송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의와 관련해서는 건덕전에서 삼경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으며, 객관으로 돌아간 뒤에도 행해졌다. 고려 관반이 거란사신에게 베푸는 過位禮와 함께 거란사신단이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치는 않지만 송사신단이 고려의 관반을 초청해 행한 유형인 館會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신단이 귀국하기 전 행한 拜表 즉 附回表가 이어졌고, 이어 국왕에 대해 致辭하는 辭歸의 예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국상을 보내 주찬을 갖춰 행하는 郊餞이 행해지고 사신단은 금교역을 통해 입국시 왔던 길을 다시 밟아 귀국하였다.

이상에서처럼 고려는 거란사신을 맞고 조서를 받으며 사신에게 연향을 베풀고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자국에서 마련한 빈례로 시행하였다. 사신의 입경에서 귀국까지의 단계를 보면 迎勞-見儀-賜宴儀-辭儀(送儀)

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세부적 절차와 관련해서 거란국 사·부와 더불어 조서를 받는 날에 대한 택일, 면위를 포함한 의례 진행 과정에 대해 說儀를 통해 상호 협의를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왕은 연례와 배표, 郊餞 등의 과정에 賜宴을 행하여 사신에 대한 후대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속을 꾀하려 하였다. 결국 고려-거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고려의 빈례는 『의례』 근례에서 기원하는 예를 기본으로 하면서 迎接·拂塵宴·擇日·說儀·受詔·面位·拜表·宴禮·辭儀·郊餞 등이 갖춰진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고려의 禮俗이 되어 거란사신 혹은 송이나 금의 사신도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하였다 하겠다.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遼史』, 『宋史』, 『高麗圖經』, 『東文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http://db.history.go.kr/KOREA>)

### 2. 논저

- 이범직, 1983, 「高麗使 禮志 「軍禮·賓禮」의 검토」 『明知史論』 창간호, 명지  
사학회
-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 김재만, 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국학자료원
- 김성규, 2000, 「宋代 東아시아에서 賓禮의 成立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72, 東洋史學會
- 沈載錫, 2002, 『高麗國王 冊封 研究』, 해안
- 金渭顯,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 李美智, 2012,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歷史學報』  
214
- 김성규, 2012,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동양  
사학연구』 120
- 한정수, 2013, 「고려 전기 정기적 국왕 행사의 내용과 의미」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 이승민, 2013, 「10~12세기 하생신사(賀生辰使) 파견과 고려-거란 관계」 『역  
사와 현실』 89, 한국역사연구회

고려 전기 ‘迎契丹使臣儀’의 내용과 의미

- 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 김성규, 2014, 「‘선화봉사고려사절단’의 일정과 활동에 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40, 한국중세사학회
- 奥村周司, 1984,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十一,二世紀における對中關係の一面」 『史觀』 110, 早稻田大學史學會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Rituals of Khitan Envoy's Reception in Early Goryeo

Han, Jung-Soo

This study aims at examine how Goryeo receive Khitan envoy and treat him in banquets in the court for welcome and seeing out him.

Firstly, I seek out friendly relation between two dynasties and its principle, ceremony and symbolism. I arrange conditions and features of Khitan envoy's comings and goings and how they reflect charact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for tribute and investiture. Secondly, I analyze the content of receptive ritual for Khitan envoy in Goryeo. For example, rituals for Josaeui who delivered royal edicts and Gibokgochiksa who granted king to operate state affairs again were analyzed. Finally, I examine the scale and status of Khitan envoy who came to Goryeo and banquets for him.

After these examination, I concluded as follows. Relation between Goryeo and Khitan was not one-sided subordinate relationship due to power superiority. Goryeo's efforts for self-reliance we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ion to Khitan and Khitan should consider these efforts. However, I can't say that relation between Goryeo and Khitan was not relationship of submission to the stronger. I can say that this relation had dual character as state faith and submission to the stronger. Goryeo made efforts to reflect this character of relation in the

ceremony receiving Khitan envoy. It reflected the status and cultural level of Goryeo dynasty. Banquets in the court for Khitan’s envoy reflected these facts.

Keywords : Ritual, Treat a guest with the utmost courtesy, Khitan, Northern Song, Relationship of Submission to the Stronger, Guksinsa (State Faith Embassy), Envoy of Khitan, Banquets in the Court, Reception, Banquet for Seeing Guest Out, Reciprocity

